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23 제출년월일 : 2023. 12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을 통해 관내 청소년육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칭 변경

[변경 전]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

[변경 후] 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

- 나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다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마.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~안 제13조)
- 바.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4조~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, 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23.10.24.~ 2023.11.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

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과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청소년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(이하 "진흥법"이라한다) 제 2조의 정의를 따른다.
- 제3조(책무) 평창군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,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.

제2장 청소년육성 정책

제4조(청소년의 달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법 제16조에 따른

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청소년의 문화, 예술, 수련, 체육에 관한 행사
- 2.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
- 3.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
- 4.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
- 5.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

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군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
- 2.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
- 3.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
- 4.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,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
- 5. 청소년의 진로, 진학에 관한 사업
- 6. 청소년의 해외 탐방·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
- 7.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・보호・안전에 관한 사업
- 8. 청소년 자활·자립 지원 사업
- 9.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

- 제6조(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평 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육성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 - 2.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
 - 3. 청소년 단체의 육성·지원
 - 4.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지원
 - 5.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7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.
 - 1. 청소년업무 담당국장
 - 2. 인재육성과장
 - 3.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
 - 4. 평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
 -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이 경우.

-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- 1.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2. 청소년 관련 단체,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청소년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(교육지원청, 경찰서 등)이 추천한 사람
- 4.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.
- 제8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, 단체·기관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
 - 2.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- 4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

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제11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 야 한다.
- 제12조(의견 청취 등)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,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청소년지도위원

제14조(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)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(이하 "지도위원"이라 한다)으로 위촉한다.

- 1.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
- 2. 청소년 보호 및 지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
- 3.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 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경찰관서의 장, 해당 읍·면장,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
-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·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,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, 학교, 인구,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- 제15조(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
 - 2. 피한정후견인
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
 - 4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
 - 5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또는 「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
 - ②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

- 2.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- 3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6조(임무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1.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 · 지원 연계 활동
- 2.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·장려 및 지원
- 3.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지원
- 4.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활동 등
- 5. 청소년의 보호 · 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
- 6.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
-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에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,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- 제18조(증표 교부)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 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- 제19조(필요경비 등 지원)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)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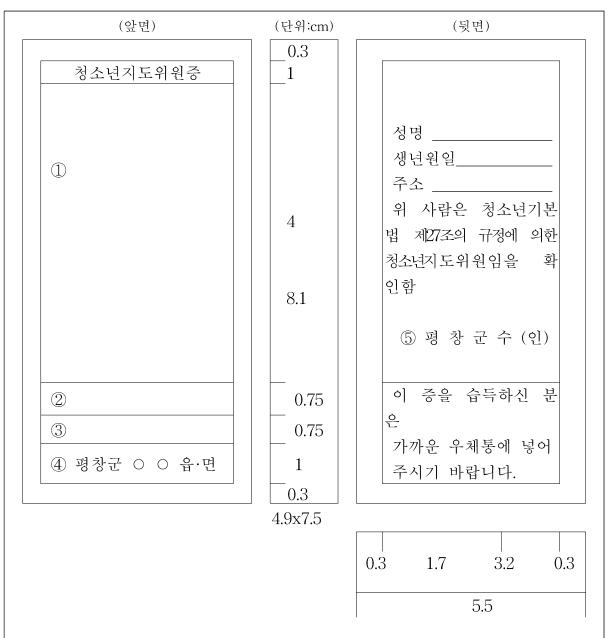
등을 위하여 읍·면,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지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.

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・제식 및 기재사항(제18조 관련)



(비고) 1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/m²으로 한다.

- 2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 - ① 사진(4.9cm x 4cm)
 -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
 - ③ 성명
 - ④ 소속기관명(읍·면)
 - ⑤ 평창군수 직인 날인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청소년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있다.
- 2. "청소년육성"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,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 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.
- 3. "청소년활동"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 태의 활동을 말한다.
- 4. "청소년복지"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·경제적지원을 말한다.
- 5. "청소년보호"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·물건·장소·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청소년시설"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청소년지도자"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- 가.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
 - 나.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- 다.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 요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8. "청소년단체"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
- 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
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 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 회를 둔다.

-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(청소년의 달)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.
- 제21조(청소년지도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.
 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<신설 2020. 5. 19.>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 5. 19.>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.<개정 2015. 6. 22., 2020. 5. 19.>
 -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

4의2.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제1항의 죄
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
- 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・청소

년대상 성범죄

- 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. <신설 2020. 5. 19.>
-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15. 2. 3., 2020. 5. 19.>
- ①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, 자격검정, 연수 및 자격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청소년지도위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 여야 한다.
 - ② 제21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될 수 없다.<신설 2020. 5. 19.>
 - ③ 청소년지도위원이제21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<신설 2020. 5. 19.>
 -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개정 2020. 5. 19.>

□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활동"이란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.
- 2. "청소년활동시설"이란 청소년수련활동, 청소년교류활동,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- 3. "청소년수련활동"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(이하 "청소년지도자"라 한다)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.

- 4. "청소년교류활동"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, 남북 간,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.
- 5. "청소년문화활동"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, 스포츠활동, 동아리활동, 봉 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말한다.
- 6. "청소년수련거리"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.
- 7. "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"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·야영하거나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·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.
- 8. "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"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 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인재육성과장 여 정 은
연락처	(033) 330 - 2020